

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6. 2.
행정위원회

1. 審 查 經 過.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6년 2월 3일 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2006년 2월 17일 회부

다. 상정일자 : 2006년 2월 20일

제119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 상정의결

2. 提 案 說 明 의 要 旨. (제안설명자 행정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좋은 교육환경을 찾기 위해 우리구를 떠나는 구민이 없도록 교육환경 개선에 대한 획기적인 예산조치 필요

나. 주요내용

- 제3조(보조기준액의 제한)에 있어 보조기준액을 자치구세의 3%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, 국·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로 지원하는 경비는 자치구세 3%범위내의 규정에 적용을 받지 않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함.

다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
 - 초·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시행령 제32조
 - 시·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제17025호)
- 예산조치 : 혁신선도 자치구 인센티브사업비(6억)를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지원
- 합 의 : 필요없음
- 입법예고(2006. 1. 19 ~ 2006. 1. 31)결과 : 의견없음

3. 專 門 委 員 의 檢 討 報 告 要 旨 (專 門 委 員 김찬재)

- 본 조례안은 우리구의 교육여건을 개선코자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을 “자치구세(목적세제외)3%이내”를 “자치구세의 3% 이내로 하되 보조금 지원 경비는 적용을 받지 않는 것”으로 하는 것으로,

- 보조기준액중 목적세를 제외한 자치구세로 함은
 - 지방세법에서 정한 자치구의 목적세로는 사업소세가 있으며, 사업소세에 대하여 동법 제244조에서 “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”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
 -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2항 제3호는 서울특별시에서 교육비 특별회계전출금으로 교육경비를 지원할 때 지방세법 제6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세 해당금액을 제외토록 하였으므로, 우리구의 교육경비 지원예산도 이에 준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,
 - 현재 사업소세가 목적세로서의 기능을 전혀 갖고 있지 않아 교육경비 조례가 제정된 서울특별시의 18개 자치구 모두 사업소세를 제외하지 않은 실정을 참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
- 보조기준액 에서 “국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로 지원하는 경비를 제외” 함은 보조 기준액의 상한을 정함은 예산편성시 당초 세출예산의 합리적 배분에 목적이 있다 할 것이므로, 회계연도중 목적을 정하여 교부되는 국·시비(구비 분담금 포함)로 지원하는 경비를 개정안과 같이 보조기준액 에서 제외하여도 본 조례의 제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.

4. 審査結果：原案可決